

부산직할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기정규칙안

심사 보고서

1992. 10. 14

의회 운영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2. 10. 2일 이재득 의원외 11인 의원 발의

나. 회부 일자 : 1992. 10. 9일 회부

다. 상정 일자 : 제16회 남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1992. 10. 14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재득 위원)

가. 제안 이유

부산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가 개정

(92.9.21 부산직할시 남구 조례 제270호)됨에 따라 본 회의규칙 내용중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명칭 개정코자 함.

나. 주요 골자

- 제2조(등록) 중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 제3조(의석 배정) 제2항중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 제50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제1항중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 제84조(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제1항중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개정함.

3. 전문위원 검토 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이무상)

- 부산직할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1992.9.21일 부산직할시 남구 조례 제270호로 부산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발의된 것임.
- 본 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1992.9.21일 남구의회의 직제가 사무과에서 사무국으로 승격하고 동시에 사무 과장에서 사무국장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었으므로 관련 규칙인 본 규칙안의 제2조(등록)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본 규칙안의 제3조(의석배정), 제50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제84조(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의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본 개정 규칙안은 관련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규칙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지극히 타당하며,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묘지 : 없 음

5. 토론 묘지 : 없 음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7. 소수 의견의 묘지 : 없 음